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 규정에”를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로 한다.

제2조중 “의장의”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 회의진행 보좌
4. 교육위원 활동 보좌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 청원 및 진정처리
7.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8.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소관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3. 경비·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4.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15.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4조중 “15명”을 “13명”으로,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를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 규정('96.2.29 규정 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연	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3조(조직)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1조(목적).....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p> <p>제2조(직무)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 .....</p> <p>제3조(조직) 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 회의진행 보좌 4. 교육위원 활동 보좌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 청원 및 진정처리 7.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8.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소관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p>

연	개	정	안
<p>제4조(사무직원의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u>15명</u>으로 하며, <u>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u></p> <p>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생략 (신설)</p>	<p>13. 경비·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4.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15.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p> <p>제4조(사무직원의정수)..... .....13명....., 직급별 정원은 <u>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u>현행과 같음</u></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96.2.29 규정 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p>		